

수입품목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

일본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

수입품목이 일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일본 수출자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

- 일본 전략물자는 수출무역관리령(이하, 수출령) 별표 1(제1항~ 제15항)에 열거된 품목으로 이는 우리나라 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 별표 2~3에 해당

〈일본 전략물자 통제목록 구성(수출령 별표 1 제1항~제16항)〉

관련 항	통제 종류	통제품목 분류	
1	전략물자 통제	군용품목	무기류
2			WMD 관련
3		화학 무기	
3-2		생물 무기	
4		미사일	
5		첨단 소재	
6		재래식 무기 관련	재료 가공
7			전자
8			컴퓨터
9			통신 / 정보보안
10			센서 및 레이저
11			항법장치
12			해양
13			항공우주 / 추진
14		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	
15	민감 품목		
16	캐치올 통제	1~15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(특정 경우 통제)	

※ 일본 전략물자 통제목록 및 임시 번역본은 다음 경로 참조
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> 제도 · 품목 > 품목정보

- 공급처로부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내 전략물자 판정결과(자기판정 또는 전문판정 선택 시행) 참고 가능

	자가판정	전문판정
판정방법	Yestrade(www.yestrade.go.kr) 접속 후 판정 가능	
판정주체	판정자(해당 업체)	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
판정 소요시간	실시간 확인 가능	약 15일 이내
비고	정확한 판정을 위해 수입하려는 품목의 특성과 기술사항 등의 확인 필요	

◆양국 모두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품목을 기본으로 하므로 통제품목 대동소이



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(삼성동)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6층
TEL 02-6000-6400 FAX 02-6000-6420 www.kosti.or.kr

www.kosti.or.kr

일본 수출규제 대응안내



일본의 수출규제 조치

규제조치 개요

일본은 '19.7.1,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

- '19.7.4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

불화소스 레지스트 폴리이미드

- '19.8중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예정

화이트국가 배제시 주요 변경사항

- (전략물자) 3개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(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)에서 개별허가(수출 건별 허가)로 전환

구분	규제조치 전	규제조치 후
허가종류	일반포괄수출허가	개별허가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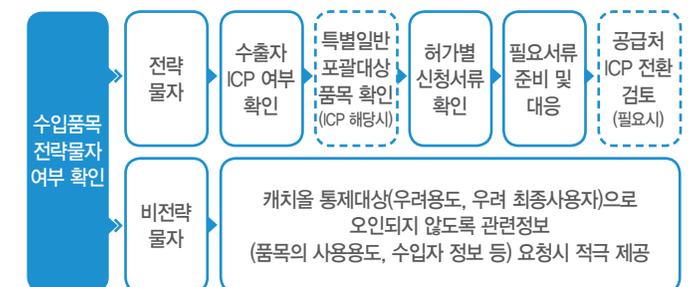
*일부 수출기업(ICP기업)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 (3개 품목은 불가)

유효기간	통상 3년	통상 6개월
처리기간	1주일 이내	90일 이내
허가 신청서류	허가신청서 등 2종	통상 3종 (품목별 최대 9종)

- (비전략물자)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(Catch-all)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

캐치올 통제	미적용	적용
--------	-----	----

수출규제 대응절차



전략물자 수입시



일본 수출허가제도 개요

전략물자(수출령 별표 1의 제1항~제15항)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계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 필요

*단,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기업*인 경우는 다수 수출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포괄허가제도 이용가능

***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(Internal Compliance Program)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**

3개 특별조치 품목

- 모든 종류의 포괄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개별허가 신청 필요
- 개별허가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재고량 및 소비량을 사전 파악 후, 수출허가 소요기간(통상 90일 이내)을 고려하여 주문

구분	주요내용
유효기간	6개월
신청방법	전자/우편/방문 신청 중 선택
처리기간	90일 이내
신청 서류 (서류 타입)	폴리이미드, 리지스트 (C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 신청서 허가신청내용 명세서 계약서 등 통제목록(수출령 별표 1)과 사양 대비표 카탈로그/사양서 등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수요자 등 서약서 및 사본
	불화수소 (D1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요자(또는 예상되는 수요자)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관련 자료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

*⑥~⑨는 수입자의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서류인 바, 이를 미리 구비·제공하여 수출자의 신속한 허가신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*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람,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다음 경로 참조
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> 제도·품목 > 각종 양식

3개 특별조치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

-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, 대다수 전략물자를 종전과 같이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음



◆ 납기에 민감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공급처를 ICP기업으로 전환 검토

* 특별일반포괄허가 적용가능 품목은 일본 「포괄허가 취급요령」 별표 A, R 지역을 참조해야 하며 취급요령 원문은 다음 경로 참조
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> 관련법령 > 법령개요 > 일본 관련법령

* 일본 ICP기업 목록은 다음 경로 참조
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> 제도·품목 > 제도자료

- 포괄허가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허가 신청 필요. 신청서류는 최대 3종

구분	주요내용
신청 서류 (품목별 상이)	A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 신청서 신청 이유서 (품목 사용목적,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 필요) 계약서 등
	B1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 신청서 허가신청내용 명세서 (거래상대방, 최종수요자 정보제공 필요) 계약서 등

◆ 허가신청내용 명세서가 요구되는 경우, 거래상대방 및 최종수요자의 세부정보 기재가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미리 구비·제공하여 수출자의 신속한 허가신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* 허가신청내용 명세서 양식은 다음 경로 참조
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> 제도·품목 > 각종 양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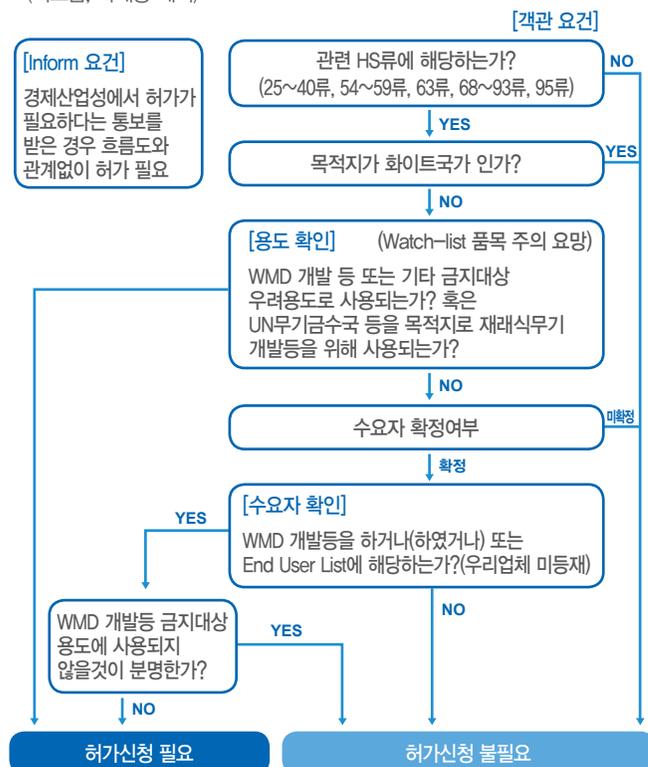
비전략물자 수입시



일본 캐치올(Catch-all) 제도 개요

비전략물자(수출령 별표 1의 제16항)*도 수출자가 다음 표에 따라 해당품목이 우려용도(WMD 및 미사일,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용도)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(단, 화이트국가에는 캐치올 통제 미적용)

* HS 25~40류, 54~59류, 63류, 68류~93류, 95류가 대상 (식료품, 목재등 제외)



* Watch-list 품목 : WMD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(40개+시리아 대상 21개)과 재래식무기와 관련되어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 목록(34개) 운영

◆ 비전략물자는 Inform요건이나 객관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허가가 필요치 않음. 일본 수출자가 품목, 수입자,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 제공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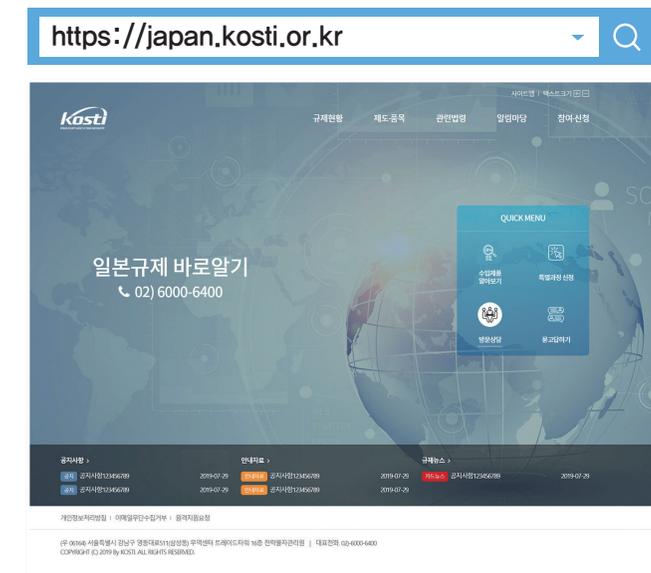
◆ Watch-list 품목도 주의를 요할 뿐, 무조건적 허가신청 필요품목은 아님

* 캐치올 관련법령 등은 다음 경로를 참조
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> 관련법령 > 법령개요 > 일본 관련법령

기타 참고정보



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



* 업계 지원을 위해 관련자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
* 일부 자료 비공식 번역본 제공(단순 참고용 활용을 권장)

일본 수출관리 주요 법적근거(기술의 경우 별도 법령에 근거)

법령	외국환 및 외국무역법(외환법)
정령	수출무역관리령(수출령)
성령	화물 등 성령(통제품목의 세부사항 포함)
통지	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, 포괄허가 취급요령등

일본 경제산업성 웹사이트 링크(원문)

수출관리 웹사이트	www.meti.go.jp/policy/ampo
관련법령	www.meti.go.jp/policy/ampo/law00.html
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람	www.meti.go.jp/policy/ampo/apply09.html

☎ **관련 문의 : 전략물자관리원(02-6000-6400)**